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

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3091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출일자 : 2025년 8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5년 8월 14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은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한 사무로, 위탁 기간이 2025.12.31. 만료 예정임에 따라
- 나. 체육 분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·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,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개요
 - 사 업 명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

○ 운영규모 : 24개 종목 26개팀 189명

나. 위탁근거 및 추진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
-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, 제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
-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('25.6.9.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1차 : 2002.1.~2004.12. (3년), 서울시체육회
- 2차 : 2005.1.~2007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3차 : 2008.1.~2010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4차 : 2011.1.~2013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5차 : 2014.1.~2017. 3. (3년 3개월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6차 : 2017.4.~2019.12. (2년 9개월, 재위탁), 서울시체육회
- 7차 : 2020.1.~2022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- 8차 : 2023.1.~2025.12. (3년, 재계약), 서울시체육회

○ 민간위탁 재위탁 사전절차 이행여부

- '25. 6. 9.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계획
(행정1부시장 제96호)
- '25. 7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80.21점)
※ 전체 배점의 75점 미만 시, 해당 수탁기관과 재계약 배제
- '25. 7. 14. 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적정, 조직담당관)

다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('26.1월 ~ '28.12월)
- 위탁유형 : 사무형
- 위탁방법 : 재위탁(공모)
- 위탁목적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들이 경쟁력을 높여 상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키고,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 필요사항을 지원
- 기관선정 :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시 체육정책에 부합한 사업계획 및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
- 위탁업무
 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
 -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생활관의 운영
 - 우수선수 확보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
 -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
 -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- 소요예산(안) : 20,547,241천원('25년 기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…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…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 중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1항¹⁾에 따라, 위탁기간 만료와 재계약 횟수 제한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 되었음.

나.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

-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는 2025년 5월 기준 24종목, 26팀, 189명(지도자: 32명, 선수: 157명)이며, 현재 수탁자인 서울특별시체육회가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.

<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>

연번	종목	합계	지도자	선수	연번	종목	합계	지도자	선수
1	양궁(남)	5	1	4	14	핀수영(남)	7	1	6
2	육상(혼성)	10	2	8	15	사격(남)	4	1	3
3	복싱(남)	8	2	6	16	조정(남)	5	1	4
4	사이클(남)	9	2	7	17	탁구(남)	7	1	6
5	사이클(여)	9	2	7	18	태권도(여)	7	2	5
6	체조(남)	7	1	6	19	당구(혼성)	4	0	4
7	스피드(혼성)	5	1	4	20	컬링(남)	5	1	4
8	펜싱(여)	11	2	9	21	수영(혼성)	4	0	4
9	축구(여)	26	4	22	22	스키(혼성)	4	1	3
10	쇼트트랙(혼성)	8	2	6	23	컬링(여)	5	0	5
11	핸드볼(여)	18	3	15	24	산악(혼성)	4	0	4
12	소프트테니스(남)	7	1	6	25	브레이킹(혼성)	2	0	2
13	철인3종(혼성)	7	1	6	26	피겨(남)	1	0	1

1)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동 민간위탁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의거하여 시정홍보 및 체육인 발굴·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

수탁자는 ▶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관리, ▶선수단 훈련 및 국내·외 대회 출전 지원, ▶경기인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생활관 운영, ▶시정 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등의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.

<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추진현황 >

위탁기간	위탁업체	수탁자 선정방법
3년('02.1.1.~'04.12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수의계약
3년('05.1.1.~'07.12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재계약
3년('08.1.1.~'10.12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재계약
3년('11.1.1.~'13.12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재계약
3.3년('14.1.1.~'17.03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재계약
2.9년('17.4.1.~'19.12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재위탁
3년('20.1.1.~'22.12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재계약
3년('23.1.1.~'25.12.31.)	서울특별시체육회	재계약

- 현 위탁기간 동안(2023년~2025년)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과 2025년 브레이킹 및 피겨스케이팅 팀을 창단하여 비인기 취약종목 육성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,

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(11종목 21명 선수 참가, 금2·은5·동2), 2024 파리 올림픽(4종목 9명 선수 참가, 은 1·동 1),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(3종목 8명 선수 참가, 금 2·은 3)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 스포츠 위상을 제고하였음.

- 이와 더불어 시민 스포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재능기부 등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, 스포츠 참여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원포인트 레슨 및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총 1,439명이 수혜받은 바 있음.

< 최근 4년간 직장운동경기부 실적 현황 >

구 분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국내대회 메달 획득 개수	목표	220개	246개	315개	375개
	실적	340개	304개	427개	집계 중
재능나눔을 통한 재능기부	목표	-	45회	47회	49회
	실적	42회	45회	52회	집계 중

- 또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가평과를 살펴보면, 개별사무 사업성과 부분에서 총점 48점의 87.3%인 41.91점을 받았으며, 이는 지난 위탁 회차의 총점 38점의 84.6%인 32.16점에 비해 2.7%p가 소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, 민간위탁 사업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.
- 다만 운영 과정에서 ▶수탁기관의 주요 조직과 직장운동경기부와와의 조화성 부재, ▶목표에 근거한 개인별 직무역량강화 필요, ▶연도별 재정 운용계획 부재, ▶사업계획과 사업성과간 연계성 부족, ▶우수성과(언론 보도 등)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등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도출되었음.
- 특히 다년간 위탁사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▶협약서 위반, ▶급여 관리 부적정, ▶특근매식비 집행기준 위반 ▶예산과목 및 계정과목 정 부적정 등 예산·회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에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지적된 문제 지속적인 이행점검과 더불어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

-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.

<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 개요 >

위탁사무명	(사무형)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
위탁유형	사무형	구분	재위탁																					
위탁기간	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(기간 : 2026.1.1 ~ 2028.12.31.)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목적	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	수혜대상	전문체육 선수 및 지도자																					
사무내용	○ 위탁 사무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
	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																							
	-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합숙소의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
	- 우수선수 확보 및 성과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																							
	-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																							
	- 시정홍보 및 기타 운동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																							
	▶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('25년 기준)																							
	종목 / 팀	24개 종목 / 26개팀(하계 20팀, 동계 6팀)																						
	인 원	189명(지도자 32, 선수 157)																						
	훈 련 장	26개 팀 40개소(무상 15, 임대 25)																						
생 활 관	22개 팀 25개소(전세 3, 월세 22)																							
소요예산(안) ※협약시작 당해연도 기준	○ 수탁기관 총세입세출예산 : 민간위탁금 20,547,241천원																							
	- 세부내역(민간위탁금)																							
	(단위 : 천원)		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 colspan="2">예산과목 및 내역</th><th>세입</th><th>세출</th></tr><tr><th colspan="2">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</th><td>20,547,241</td><td>20,547,241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</td><td>인건비</td><td>15,534,497</td><td>15,534,497</td></tr><tr><td>기본경비</td><td>2,290,651</td><td>2,290,651</td></tr><tr><td>일반운영비</td><td>2,269,453</td><td>2,269,453</td></tr><tr><td>수탁기관 운영비</td><td>452,640</td><td>452,640</td></tr></table>			예산과목 및 내역		세입	세출	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		20,547,241	20,547,241		인건비	15,534,497	15,534,497	기본경비	2,290,651	2,290,651	일반운영비	2,269,453	2,269,453	수탁기관 운영비	452,640	452,640
	예산과목 및 내역		세입	세출																				
	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		20,547,241	20,547,241																				
		인건비	15,534,497	15,534,497																				
		기본경비	2,290,651	2,290,651																				
		일반운영비	2,269,453	2,269,453																				
		수탁기관 운영비	452,640	452,640																				
○ 이용료 등 수입금액 : 해당 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

- 올해 실시된 2025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‘적정’ 심의 결과를 받은 바 있음.

다만 조직담당관은 ‘적정’ 결과의 단서로 ▶홍보, 마케팅 업무 경우 직무

재배치 또는 TF 구성, ▶양방향 소통채널 확대 및 서울시직장경기부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법 개선 등을 권고하였음.

- 이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부에는 담당자 1명만이 선수단 홍보·마케팅·언론대응 업무에 ▶전담 종목 5팀 관리, ▶체육진흥관리위원회 및 스포츠단운영위원회 관련 업무, ▶규정개정 관련 업무, ▶신규 팀 창단 공모 추진 등을 같이 하고 있어 인력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임.
- 따라서 관광체육국은 소관업무의 민간위탁 성과가 대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전파 및 도달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 시 수탁자가 홍보 및 마케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또는 해당 업무에 전문인력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임.
- 관광체육국이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 회서를 살펴보면 ▶위탁 근거법령(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이 있으며, ▶체육 생태계 및 종목별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 필요, ▶민간기관 수탁에 따라 시비 지원 외에 후원 등 외부재원 확보 가능하기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또한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
또한 위탁사무가 다른 방식(직영, 용역, 대행 등)으로는 수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결과를 참고하였을 때 동 민간위탁의 경우 경기부 운영 경험에 있는 민간기관을 통해 효율적인 사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사업부 인력구조에 있어 비정규직 비중(78%)이 매우 높으며, 시간외 근무 역시 연 평균 2,000시간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, 비정규인원의 근무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신규 인력 증원

등 직무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- 따라서 관광체육국은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생태계의 선순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 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에 충실해야 할 것임.

또한 차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고용안정성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, 위탁사무 고유의 사업 운영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임.